

## ◆ 23년 위험물안전관리법 **객관식** 정오표

-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오탈자 등은 제외

### Page 13. 제1장 문제10번. 해설 표 안

#### 오류. 수정 전

옥내저장소 면적 제한 〈★기능장〉	단층 : 면적 2,000㎡ 이하	단층 : 면적 1,000㎡ 이하
	다층 : 면적 <b>합계</b> 1,000㎡ 이하	다층 : 저장 불가
	복합용도 : 면적 75㎡ 이하, 지정수량 20배 이하	<del>(유별·품명의 제한 없음)</del>

#### 오류. 수정 후

옥내저장소 면적 제한 〈★기능장〉	단층 : 면적 2,000㎡ 이하	단층 : 면적 1,000㎡ 이하
	다층 : 면적 <b>합계</b> 1,000㎡ 이하	다층 : 저장 불가
	복합용도 : 면적 75㎡ 이하, 지정수량 20배 이하	

### Page 163. 제2장 문제63번. 해설 표 안 / 영 개정. 시행 '23. 4. 25.

### Page 353. 제7장 문제11번. 해설 표 안 / 영 개정. 시행 '23. 4. 25.

◆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		
구분	행정처분 : 취소, 사용·업무정지 (♣규칙 [별표 2])	과태료 부과처분 (♣영 [별표 9])
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최근 2년간</b></li> <li>■ 같은 위반행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최근 1년간</b></li> <li>■ 같은 위반행위</li> </ul>
기간의 계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</li> </ul>
횟수에 따라 <b>가중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음 차수</li> <li>■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: 높은 차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다음 차수</li> <li>■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: 높은 차수</li> </ul>
<b>감경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용정지·업무정지인 경우</li> <li>↳ 감경 : <b>2분의 1</b> 범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소상공인 아닌 경우</b></li> <li>↳ 감경 : <b>2분의 1까지</b></li> <li>↳ 감경 제외 : 고의, 중과실</li> <li>↳ 감경 제외 : 체납자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★개정. 시행 '23. 1. 5.&gt;</li> <li>■ 지정취소·등록취소인 경우</li> <li>↳ 감경 : <b>6개월의 업무정지</b></li> <li>↳ 감경 <b>불가</b> : 취소 사유의 1. 2. 3호 (=처분 1차의 취소 사유인 경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★개정. 시행 '23. 4. 25.&gt;</li> <li>■ <b>소상공인 경우</b></li> <li>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해당자)</li> <li>↳ 감경 : <b>100분의 70 범위</b></li> <li>↳ 감경 제외 : 고의, 중과실</li> <li>↳ 감경 제외 : 체납자</li> </ul>

Page 252. 제4장 문제13번.

오류. 수정 전

13.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 중에서 액체 위험물의 내장용기의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?

오류. 수정 후

13.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 중에서 액체 위험물의 용기의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?

Page 352. 제7장 문제11번. 해설 표 안 / 영 개정. 시행 '23. 4. 25.

◆ 시행령 [별표 9] :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**2분의 1까지**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**그러하지 아니하다.**

- 1) 위반행위자가 「**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*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**처음 위반행위**를 한 경우로서 **3년 이상**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**사소한 부주의나 오류** 등 **과실**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**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**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**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**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나목 신설 2023. 4. 25>

**나.** 부과권자는 **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**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**소상공인**에 해당하고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**않은**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**100분의 70 범위**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- 1) 위반행위자의 **현실적인 부담능력**
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**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**

<기존 나목 → 다목 개정>

**다.** 위반행위의 **횟수**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**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**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**기간의 계산**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**적발된 날**을 기준으로 한다.

<기존 다목 → 라목 개정>

**라.** **다**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**가중처분의 적용 차수**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**높은 차수**를 말한다)의 **다음 차수**로 한다.

Page 387. 제8장 문제24번. 해설 및 정답

오류. 수정 전, 정답 ②

①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외의 것 : 내화구조
②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: 가벼운 불연재료
③ 3석유류 : <b>내화구조</b>
④ 6류 모두 : 내화구조

오류. 수정 후, 정답 ②, ③ (복수정답)

①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외의 것 : 내화구조
② 2류 중 분말상태·인화성고체 : 가벼운 불연재료
③ 3석유류 : <b>가벼운 불연재료</b>
④ 6류 모두 : 내화구조

Page 551. 제8장 문제133번. 해설 3번째 표 (규칙 개정·시행 '23. 6. 29.)

<p>◆ 충전공지 [=충전기기(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)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자동차용 충전설비를 건축물 『<b>밖에</b>』 설치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충전공지 : 주요공지 또는 급유공지 <b>외의 장소</b>에 확보</li> <li>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↳ 공지 너비 및 길이의 규정이 없음 →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 범위를 표시</li> </ul> </li> <li>■ 충전공지의 설치 장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↳ <b>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</b>에 둘 것</li> <li>(=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<b>외의 장소</b>에 둘 것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● 자동차용 충전설비를 건축물 『<b>안에</b>』 설치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당 건축물의 <b>1층</b>에 설치</li> <li>■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 :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
--

Page 552. 제8장 문제133번. 해설 4번째 표 (규칙 개정·시행 '23. 6. 29.)

Page 559. 제8장 문제138번. 해설 4번째 표 (규칙 개정·시행 '23. 6. 29.)

●입법예고와 조금 다르게 개정

(입법예고 의견수렴의 의미의 내용을 신뢰하지 말고, 개정된 정확한 법문을 확인할 것)

◆ 주유취급소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(규칙 개정·시행 2023. 6. 29.)	
개정 전	개정 후
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2)</p> <p>●전기자동차용 <b>충전설비</b>를 V.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<b>밖에</b> 설치하는 경우 <b>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</b></p>	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2)</p> <p>●전기자동차용 <b>충전설비</b>를 V.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<b>밖에</b> 설치하는 경우 <b>충전공지는 폭발위험장소</b>(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<b>폭발성 가스</b>에 의한 <b>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.</b>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<b>외의 장소</b>에 둘 것</p>
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4가) 단서</p> <p>●<b>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.</b> 다만, 분전반을 <b>고정주유설비</b>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중심선으로부터 <b>6미터 이상, 전용탱크</b>(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 <b>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</b>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4가) 단서</p> <p>●<b>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.</b> 다만, 분전반을 <b>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</b>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<b>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</b></p>
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5가) 및 나)</p> <p>●충전기와 인터페이스[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<b>커플러(coupler), 인렛(inlet)</b>, 케이블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가) <b>충전기</b>는 <b>방폭성능</b>을 갖출 것. 다만, <b>충전설비의 전원 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 주변에 설치하고,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,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, 전용탱크 통기관 끝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</b>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나)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「<b>전기용품안전 관리법</b>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</p>	<p>규칙 별표 13 VI 제1호아목5가) 및 나)</p> <p>●충전기와 인터페이스[충전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<b>커넥터(connector)</b>, 케이블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</p> <p>가) <b>충전기</b>는 <b>방폭성능</b>을 갖출 것. 다만,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(1) 충전기의 <b>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</b>를 <b>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 주변에</b> 설치할 것</p> <p>(2) 충전기를 <b>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</b>에 설치할 것</p> <p>나)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「<b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</b>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</p>

Page 558. 제8장 문제138번. 해설 3번째 표 삭제 (규칙 개정·시행 '23. 6. 29.)